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1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문대림·강선우·김영호

서삼석 · 복기왕 · 주철현

유준병 • 박지원 • 박수현

신정훈 · 정준호 · 이원택

오세희 • 박희승 • 민형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우박"을 "이상고온(異常高溫), 우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복구"를 각각 "복구 및 생산비 보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의 증가 및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 2.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3. 연중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실태파악과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4.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본문 중 "어가에 대한"을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생산비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비료대금"을 "비료대금을 포함한 생산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	2
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u>우박</u> , 서	<u>o]</u>
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u> 상고온(異常高溫), 우박</u>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	
(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	
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	
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	
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	
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제3조(재해대책)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u>마련한다</u>.

- 1. (생략)
-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u>복구</u>에 관한 사항
-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5. (생략) <신설>

마련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복구</u>
<u>및 생산비 보장</u>
3
<u>복</u>
<u>구 및 생산비 보장</u>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의 증가 및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

 별 생산적합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 2.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
 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연중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 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 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 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 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크네이디어 6세시표 한다기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u></u> ੁ
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실거
래가를 고려하여 생산비를 포
· 함한
,
②

시대교아과 토게자리 과리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2. (생략)
-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u>비료</u> 대금
- 4. ~ 10. (생략)
- ③ ~ ⑧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u>म</u>]
료대금을 포함한 생산비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